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9.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환경자원화시설 위탁기간 만료(2025.12.31.)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2) 필요성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처리 효율성 제고

다. 위탁사무내용

- (1) 소각시설 운전·유지관리 (소각능력 유지)
- (2)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유지관리
- (3) 매립시설 운영·유지관리 (매립기능 유지)
- (4) 침출수 처리시설(300톤/일) 운영·유지관리
- (5)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 폐수 등) 적정 운영관리
-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적정처리
- (7) 주민편익시설 및 백현체육공원 운영·유지관리
- (8) 환경자원화시설 홍보관 운영 및 견학·방문 안내 등

라. 위탁시설

- (1) 위 치 : 구미시 산동읍 송백로 499
- (2) 부지면적 : 411,456m²
- (3) 건축면적 : 10,794m² (연면적 : 18,362m²)
- (4) 시설규모
 - 소각시설 : 200톤/일 (100톤/일×2기)
 - 매립시설 : 면적 68,276m², 용량 1,142,000m³ (1단계, 30년)
 - 재활용선별시설 : 50톤/일
 - 침출수처리시설 : 300톤/일
 - 주민편익시설 및 백현체육공원 : 87,056m²

(5) 재산현황

(단위 : m²)

연번	시 설 명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합 계	10,794.05	18,362.62	
1	소 각 동	3,307.67	7,247.89	지상5층, 지하1층
2	재활용선별동	2,267.54	2,376.79	지상2층
3	정 비 동	259.05	259.05	지상1층
4	관 리 동	850.42	1,810.79	지상3층
5	경 비 동	76.94	46.65	지상1층
6	세 차 동	224.64	224.64	지상1층
7	침출수처리동	752.82	2,073.81	지상1층, 지하3층
8	대형폐기물처리장	188.00	180.00	지상1층
9	EPR저장창고-1	81.40	81.40	지상1층
10	EPR저장창고-1	96.20	96.20	지상1층
11	스티로폼임시보관창고	26.86	26.86	지상1층
12	폐기물보관창고	495	495	지상1층
13	선별동근로자휴게실	195.24	194.04	지상1층
14	스티로폼감용기동	398.78	398.78	지상1층
15	주민편의시설	1,573.49	2,850.72	지상3층, 지하1층

마.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간)

바. 소요예산 : 17,067백만원 (2026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아.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5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3. 부서의견

본 시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5)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 (6)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보고서 : 우수(재위탁 가능)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1.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25. 2. 17. ~ 2025. 7. 16.
- 평가업체 :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
- 대 상 : 구미 환경자원화시설
- 대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2. 평가기준

- 평가결과의 등급은 5단계로 구분하여 결과에 따라 수탁업체의 업무 성과를 평가함

등 급	점 수	비 고
매우 우수	90점 이상	- 지표에서 요구되는 영역에 적합한 관리방법을 적용 - 해당 관리방법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 확실
우수	80 ~ 90점 미만	- 일부 지표에서 요구되는 영역에 적정한 관리방법을 적용 - 해당 관리방법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 존재
보통	70 ~ 80점 미만	- 지표에서 요구되는 영역에 기본적 관리방법을 적용 - 해당 관리방법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 미약
미흡	60 ~ 70점 미만	- 가장 기본적인 관리방법을 적용 - 해당 관리방법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 없음
매우 미흡	60점 미만	- 관리방법의 부재

3. 평가결과

구 분	배점	2023년	2024년	평 균	결 과 분 석
환경자원화 시설	100	90.02 (매우우수)	87.49 (우수)	88.76 (우수)	'우수' 등급으로 재위탁 가능
주민편익 시설	100	90.71 (매우우수)	94.71 (매우우수)	92.71 (매우우수)	'매우우수' 등급으로 재위탁 가능

○ 환경자원화시설 세부 평가 결과

구 분	배점	2023년	2024년	평균
관리운영	15.00	14.67	14.67	14.67
인력활용	10.00	8.49	8.48	8.48
거버넌스	3.00	2.63	2.63	2.63
실험실	2.00	1.03	1.91	1.47
소각시설	32.00	30.80	26.45	28.63
선별시설	18.00	15.90	14.55	15.23
매립시설	18.00	16.50	16.80	16.65
기타(수범실적)	2.00	0.00	2.00	1.00
총 계	100.00	90.02	87.49	88.76

○ 주민편익시설 세부 평가 결과

구 분	배점	2023년	2024년	평균
관리운영	18.00	15.71	15.71	15.71
인력활용	15.00	15.00	15.00	15.00
거버넌스	3.00	3.00	3.00	3.00
고객만족	7.00	0.00	7.00	3.50
편익시설	54.00	54.00	54.00	54.00
기타(수범실적)	3.00	3.00	0.00	1.50
총 계	100.00	90.71	94.71	92.71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도지사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
4. 법 제29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

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부담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 시설축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부 또는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제1항에 따른 수탁자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처리시설의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격기준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기준

○ 추계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세입	○매전수익	415	415	415	1,245
	○재활용 판매수익	738	738	738	2,214
	소계(a)	1,153	1,153	1,153	3,459
세출	○고정비 (인건비 등)	8,215	8,215	8,215	24,645
	○변동비 (시설유지비 등)	8,852	8,862	7,847	25,561
	소계(b)	17,067	17,077	16,062	50,206
□ 총 비용(b-a)		15,914	15,924	14,909	46,74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17,067	17,077	16,062	50,206
민간		-	-	-	-
기타		-	-	-	-
합계		17,067	17,077	16,062	50,206

5. 부대의견

- 계약 낙찰을 등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자원순환과 환경자원화시설팀 박현정(☎480-523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6	2027	2028
합 계		50,206	17,067	17,077	16,062
고정비	소 계	24,645	8,215	8,215	8,215
	소각시설	15,345	5,115	5,115	5,115
	매립시설	2,100	700	700	700
	재활용시설	6,519	2,173	2,173	2,173
	주민편익시설	681	227	227	227
변동비	소 계	25,561	8,852	8,862	7,847
	소각시설	16,213	5,726	5,717	4,770
	매립시설	5,372	1,778	1,794	1,800
	재활용시설	2,979	1,016	1,009	954
	주민편익시설	997	332	342	323

소 관 부 서		자 원 순 환 과
입 안 자	과 장	김 형 순
	팀 장	박 유 리
	담 당 자	박 현 정 (480-5233)